

「평창군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2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2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산림과장)

가. 제안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도시림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로 2017. 12. 29.에 제정하여 운용해 왔으나,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 6. 9.에 새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제명을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함
- 2) 군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

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도시숲으로 정의함(안 제2조)

3) 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지의 선정 및 조성 방법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4) 도시숲의 조성·관리에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음(안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본 조례안 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내용이 이관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된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규정에는
심의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가 누락되었으므로,
안 제8조제2항에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안 제8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관련,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함.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용어의 정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도시숲 등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관리

제4조(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변경사항이나 재정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지) ① 군수는 도시숲 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 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 공유지 중 도시숲 등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깝게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 등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④ 수목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7조(도시숲 등의 기능별 조성 및 관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보식·가지치기·병충해 방제 등 도시숲 등의 반복적 유지관리 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승인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주민대표
3. 주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 관계 부서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3명 이상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

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 등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3장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제16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향토수종
2.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종
5. 생육상태, 병충해 및 공해에 강한 사후관리가 용이한 수종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 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③ 주요 도로변 식재 수종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주택 주변이나 골목길의 가로수는 보행자의 가시성 확보를 위해 지면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에서 형성되도록 조성한다.

③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표 3에 따라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④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⑤ 가로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른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⑥ 가로수가 관목일 경우 식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재간격은 식재 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

2.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균식 또는 혼식

제18조(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균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활착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한 후 심을 수 있다.

제19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 가능성
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20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 4에 따라 도로 노선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표 4에 따라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4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14조에 따라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2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개·보수시 또는 새로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은 별표 7을 따른다.

제21조(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①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꿔심기(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이하 “바꿔심기”라 한다.) 및 메워심기(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메워심기”라 한다.)할 수 있다.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5.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6.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를 할 수 있다.

제22조(이식·제거·가지치기 등)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야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로수 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병해충 방제) 군수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5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부담) 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

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복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6와 같다.

제25조(부담금의 강제징수)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26조(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주민들이 도시숲 등의 유지관리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으며, 가로수의 유지 및 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별표 8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주기 및 도시숲등의 관리

2. 병해충 발생신고

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각종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주변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27조(점검 등) ① 군수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5에 따라 병해충 발생시기 전·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유지)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로수 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평창군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붙임 [서식1] ~ [서식2] 별첨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술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관리의 범위·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도시숲등의 유지·증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이 유지·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제6조에 따른 조성·관리계획 또는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7조제1항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지역별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술개발 및 정보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연구 및 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위치 등이 포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국제협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정보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장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생태적 건강·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시숲등 관리지표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라 관할 도시숲등을 측정·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평가 및 활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

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숲등 조성·관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4장 민간참여 활성화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2.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
4. 제18조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도시숲지원센터에 한정한다)
5. 도시녹화운동의 추진 및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민간협력
6.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숲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국민참여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도시숲등을 조성·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등 인증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나무와 토지등을 관리·처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 및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의 반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도시숲등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숲등의 조성이 끝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도시숲등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장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련 단체의 장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에 대한 인증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시·도시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